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성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2

발의연월일: 2024. 6. 17.

발 의 자:신성범・이종욱・김종양

엄태영 · 김승수 · 임이자

조지연 • 박정하 • 조은희

구자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농어업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의 사업소분·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 면제를 두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여건 악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농어업 및 관련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2024년 이후 일몰 예정인 주민세 면제에 대한 지방세 특례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관련 사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이어가려 는 것임(안 제10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2항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	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
관련 감면 등) ① (생 략)	관련 감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농어업인이 영농, 영림, 가축	②
사육, 양식, 어획 등에 직접 사	
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	
세 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 제81	
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	
세액으로 한정한다) 및 종업원	<u>2</u>
분을 <u>2024년 12월 31일</u> 까지 면	027년 12월 31일
제한다.	